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핵심자원 관련 또는 국내산업영향 수출입제품
원산지판정 의무화〉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15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핵심자원 관련 또는 국내산업영향 수출입제품 원산지판정 의무화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구자근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8.
3. 회부연월일 : 2025. 12.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외국산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산으로 판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대해 단순한 가공활동 후 국산으로 소위 ‘택(tag)같이’하여 판매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산업생태계 및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Ⅲ. 검토의견

1. 핵심자원 관련 또는 국내산업영향 수출입제품 원산지판정 의
무화

개정안은 핵심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입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원산지판정을 하도록 의무화함(제34조제1항 및 제4항).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① ----- ----- ----- ----- ----- 다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핵심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원산지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하여서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거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원산지 판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원산지 판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

현행	개정안
⑤ ~ ⑦ (생략)	려야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등이 요청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세관협조를 통해 원산지를 조사하여 직권판정¹⁾하거나, 무역거래자 등의 요청을 받는 경우 관세청장이 판정하도록 권한을 위탁²⁾하고 있음.

1) 「대외무역법」 제52조제1항 및 시행령 제91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에 조사권 위탁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6호의 권한 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에 관한 권한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확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수입한 물품등과 관련 서류의 검사에 관한 권한

4.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4의2.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이 영 제5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및 그 결정의 취소에 관한 권한

5. 제6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명령에 관한 권한

6.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중 관세양허(關稅讓許)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에 관한 권한

7. 법 제59조제2항제3호(이 항 제3호의 권한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2) 「대외무역법」 제52조제1항 및 시행령 제91조제6항에 따라 관세청장에 위탁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 1의2. (생략)

2.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원산지의 판정 및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권한

*제62조(원산지 판정 절차)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략)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견본이 없어도 그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⑤ (생략)

3. 제4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휘·감독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

이 때 산업통상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세번변경, 부가가치 및 주요공정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함.

[표 2]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원산지 판정기준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 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세번변경기준)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 (※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3.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2. ~ 5. (생략)

따라서 국내기업이 A국으로부터 태양광 인버터 등을 수입하여 단순 가공활동을 한 후 해당 기업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는 A국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현재 수출입자는 「관세법」 및 시행령³⁾에 따라 수출입 통관신고 시에는 원산지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산지표시대상품품의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함.

그러나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가능성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3)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2.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4. ~ 7.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 4. (생략)

4)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④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수입 물품등에 한정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품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품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즉, 현행 법령에 따르면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방식 등 원산지표시 기준을 준수하되 국내 기업 브랜드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나, 원산지표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제재하고 있음.

개정안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적발 및 처벌에 그치지 않고, 핵심자원⁵⁾에 관련되거나 국내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판정을 의무화하여 사전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원산지판정 불명확성이나 허위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 산업통상부의 원산지 직권판정은 비정기적으로 수요발생시⁶⁾에 세관협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2. 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나.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광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

다. 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의 소재·부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부품

6) 우회수출 의심물품 보도, 민원 발생 등(연 평균 20여건)

원산지판정을 보다 엄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체별·생산방식별로 현지실사 등의 절차가 강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국내 태양광 산업 관련 협회 및 협의체는 동 개정안에 따른 원산지 판정 강화보다는 공공사업시 국산제품 우선사용, 국내생산제품 대상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입장⁷⁾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산업통상부는 태양광인버터 품목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KS인증, KC인증, 기술기준 적합성평가 등 3가지 의무인증⁸⁾을 받아야 생산할 수 있는데, 해당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원산지에

7) 관련 협회·단체 의견

기관명 (의견제출일)	의견 주요내용
한국태양광산업협회 (25. 12. 16)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도 정부가 직권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며, 판정 시에는 판정대상 품목에 대해 업계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태양광 업계에서 원산지 문제가 거론된 것은 과거 태양광 모듈에 중국산 셀이 사용되어 한국산으로 유통된 사례로, 당시에 원산지 판정이 아닌, 원산지 표시단속의 문제*가 쟁점이었음 * 태양광모듈 원산지 관련 정책토론회(한무경 의원, '22.1.24)
한국인버터 생산자협의체 (25. 12. 26)	• 태양광인버터 관련 보도에 대해서 업계 및 정부의 주된 관심사는 원산지에 대한 판정이나 단속문제가 아니라, 중국산 제품의 시장지배에 대한 국산품 지원에 초점 - 수 차례, 토론회와 업계 현장방문에서, 논의된 주된 사항은, 공공조달에서 국산품 조달 가점부여, 세제혜택, 대기업의 중국위탁생산 비중 축소 등 정부지원에 대한 것임

8) 태양광인버터 의무인증

- (KS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20조 내지 제22조, 제42조,
- (KC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49조
- (적합성 평가)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86조

대한 판단을 거치게 되고 판매 중에도 수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원산지판정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낮으며,

2021년, 2024년에 태양광 인버터 시장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
속한 바 있고, 관세청도 2025년 12월 태양광인버터를 포함한 산업·안
전용품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임.

문 의 처
02)6788-5456